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36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9.

제출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가. 청사시설(예식장) 운영 종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제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중 예식 항목 삭제(안 제1조)

나. 정의 중 예식장, 카페테리아 항목 삭제(안 제2조제1호)

다. 대관의 범위 중 예식장 항목 삭제(안 제6조)

라. 사용료의 감면에서 예식 관련 조항 삭제(안 제12조제1항제3호, 제4호)

마. 시설물 사용료 및 사용시간 별표 수정(안 별표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94조의2, 제94조의3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2. 8. 10. ~ 8. 30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대구광역시 달성군청사 시설물(이하 ”시설물“이라 한다)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청사 시설물”이라 하고, “문화예술·강연회·예식 등”을 “문화예술·강연회 등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시설물”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사에 있는 대강당, 식당, 도서관 등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기타의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군청사의 시설 및 설비”를 “시설물”로 하고, 같은 조제1호 중 “예식장, 대강당”을 “대강당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7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8조제2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3호를 삭제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대구광역시 달성군청사 시설물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</u> 등을 개방하여 <u>문화예술·강연회·예식</u> 등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충 및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대구광역시 달성군청사 시설물</u> 등을 ----- ----- <u>문화</u> <u>예술·강연회</u> 등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“시설물”이란 <u>예식장, 대강당, 식당, 도서관, 카페테리아 등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.</u> 2. ~ 5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 1. “시설물”이란 <u>대구광역시 달성군청사에 있는 대강당, 식당, 도서관 등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.</u> 2. ~ 5. (현행과 같음)
제5조(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)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군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,서류 및 <u>기타의</u>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	제5조(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 -----.

제6조(대관의 범위) <u>군청사의 시설 및 설비</u>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6조(대관의 범위) <u>시설물</u> 중 ----- ----- -----.
1. 기본시설 : <u>예식장, 대강당</u> 등 과 그 부속시설	1. 기본시설 : <u>대강당</u> 등과 -----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사용료의 감면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	제12조(사용료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<u>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본인의 예식</u>	<삭 제>
4. <u>신랑,신부 또는 혼주 중 1인이 접수일 현재 달성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거나 직장소재지가 달성군 관내인 자의 예식</u>	<삭 제>
제17조(시설물 이용의 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	제17조(시설물 이용의 제한) ----- ----- -----.
1 ~ 3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기타</u> 군수가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	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

고 인정 하는 경우

제18조(도서자료 대출 및 복사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대출 및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하는 신분증 소지자
3.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

[별표]

시설물 사용료 및 사용시간(제11조 제1항 관련)

1. 시설물 사용료

시 설 명	기 준	사 용 료 (원)	운 영 시 간	비 고
대 강 당	오 전	50,000	09:00~12:00	432석 (공연시설)
	오 후	70,000	13:00~17:00	
	야 간	90,000	18:00~22:00	
예 식 장	1회(2시간)	100,000	10:00~16:00	220석

2. 부속설비 사용료

설 비 명	기 준	사 용 료 (원)	비 고
냉 · 난 방	대 강 당	80,000	예식시 면제
	예 식 장	50,000	
피 아 노	1회	30,000	대강당
빔 프로젝터	1회	20,000	대강당
조 명	1회	25,000	대강당

1. 휴무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시설물 사용료 기준 30%를 가산함(예식은 제외)
2. 연습, 무대설비,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 시설물 사용료 기준 50%로 함.
3. 초과시 사용료 가산 : 메시간 초과 마다 사용료의 20% 가산함.

-----.

제18조(도서자료 대출 및 복사) 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해당 -----

<삭 제>

[별표]

시설물 사용료 및 사용시간(제11조 제1항 관련)

1. 시설물 사용료

시 설 명	기 준	사 용 료 (원)	운 영 시 간	비 고
대 강 당	오 전	50,000	09:00~12:00	423석 (공연시설)
	오 후	70,000	13:00~17:00	
	야 간	90,000	18:00~22:00	

2. 부속설비 사용료

설 비 명	기 준	사 용 료 (원)	비 고
냉 · 난 방	1회	80,000	대강당
피 아 노	1회	30,000	대강당
빔프로젝터	1회	20,000	대강당
조 명	1회	25,000	대강당

1. 휴무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시설물 사용료 기준 30%를 가산함(예식은 제외)
2. 연습, 무대설비,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 시설물 사용료 기준 50%로 함.
3. 초과시 사용료 가산 : 메시간 초과 마다 사용료의 20% 가산함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94조의2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·처분·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·처분·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·운영할 수 있다.

제9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